

## 직권조치결과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06월 26일

신길제1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고 *결	이 *희 1998-02-09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5길 (신길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6-26